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51731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3. C

4. D

5.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이종승

6. F

7. G

8. H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16,785,370원 및 그중 113,005,298원에 대하여 2023. 5. 11.부터

2023. 6. 12.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F는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0,050,873원 및 그중 48,430,842원에
대하여 2023. 5. 11.부터 2024. 1. 31.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G, H는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33,367,248원 및 그중 각
32,287,228원에 대하여 2023. 5. 11.부터 2024. 1. 31.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각 지급하라.2. 가. 피고 C, D와 망 I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D은,1)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3. 8. 접수 제401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2) 피고 G, H에게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3. 8. 접수 제401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D과 피고 A 사이에 2022. 3.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D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3. 8. 접수 제401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망 I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목록상의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를 생략하고 ‘제○항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20.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피고 E과 피고 A 사이에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각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① 2018. 9. 20.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J, 보증금액 57,600,000원, 보증기한 2023. 9. 19.로 된 신용보증서, ② 2018. 9. 20.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K, 보증금액 131,200,000원, 보증기한 2023. 9. 19.로 된 신용보증서, ③ 2020. 4. 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L, 보증금액 6,560,000원, 보증기한 2021. 3. 31.(그 후 2023. 3. 31.까지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 ④ 2020. 4. 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M, 보증금액 5,760,000원, 보증기한 2021. 3. 31.(그 후 2023. 3. 31.까지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 주어, 피고 A이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각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금액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과 아들인 망 I(2022. 9. 15. 사망)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피고 A이 원고의 보증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23. 5.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13,005,2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연 8%이며,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2,671,902원이고,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1,108,170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① 2020. 5. 13. 그 소유의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5. 14. 접수 제59145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E에게 마쳐주었고, ② 2021. 11. 1. 그 소유의 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11. 23. 접수 제251252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E에게 마쳐주었으며, ③ 2021. 11. 1. 그 소유의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피고 A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피고 A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11. 23. 접수 제251253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A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2, 3, 6항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E에게 마쳐주었고, ④ 2022. 3. 4. 그 소유의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2. 3. 8. 접수 제40125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피고들에게 마쳐주었다.

2) 한편, 망 I은 채무초과상태에서 ① 2020. 5. 13. 그 소유의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망 I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5. 14. 접수 제120728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E에게 마쳐주었고, ② 2022. 3. 4. 그 소유의 제1, 41), 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3. 8. 접수 제40125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피고들에게 마쳐주었다.

라. 망 I의 상속관계

망 I은 2022. 9. 1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와 자녀들인 피고 G, H가 있고,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은 피고 F가 3/7 지분, 피고 G, H가 각 2/7 지분이다.

[인정근거]○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A, B, C, D,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 B

원고는 피고 A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A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785,370원(= 대위변제금 113,005,298원 + 대지급금 2,671,902원 + 위약금은 1,108,17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13,005,298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3. 5. 1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6. 12.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 G, H

망 I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망 I은 2022. 9. 1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와 자녀들인 피고 G, H가 있고,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은 피고 F가 3/7 지분, 피고 G, H가 각 2/7 지분이다.

따라서 피고 F는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50,050,873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48,430,84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3. 5. 11.부터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2024. 1.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4. 1. 31.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 H는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각 33,367,248원 및 그중 각 대위변제금 32,287,228원에 대하여는 위 2023. 5. 11.부터 위 2024. 1. 31.까지는 위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구상금 채권은 피고 C, D이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2022. 3.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터 잡아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런데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C,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C, D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D은 피고 A에 대하여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3. 8. 접수 제401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망 I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연대보증금 채권은 피고 C, D이 제1, 4, 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I과 사이에 2022. 3.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터 잡아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런데 망 I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 I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C,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망 I과 피고 C, D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D은 망 I의 배우자인 피고 F에게 1, 4, 5항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망 I의 자녀들인 피고 G, H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3. 8. 접수 제401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과 망 I이 피고 E과 체결한 이 사건 피고 A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망 I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2, 3, 6항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F, G, H에게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5. 13. 및 2021. 11. 1. 당시 아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망 I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과 망 I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이 성립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3. 4. 7.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제반 사정 하에서는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면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피고 A과 망 I은 채무초과상태였으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E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부터 P를 운영하는 피고 A에게 2013. 6.경 및 2014. 5.경 각종 목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1차로 2020. 5. 13. 망 I 소유였던 제1항 부동산과 피고 A 소유인 제6항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받았고, 그 이후에도 목재를 계속 공급하며 2021. 11. 1. 피고 A 소유의 제2, 3항 각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② 피고 E은 1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거래가 중단된 2022. 10.까지 29개월 동안 총 95회에 걸쳐 합계 18억여 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해 주었고, 2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2022. 10.까지 12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4.9억 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은 피고 E으로부터 목재를 계속 납품받음으로써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피고 E에게 연대보증인인 망 I과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고 E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 F,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연

별지

1) 화성시 N 공장용지 1,111㎡ 중 200㎡는 2023. 6. 2. 분할로 인하여 O로 이기되었다.